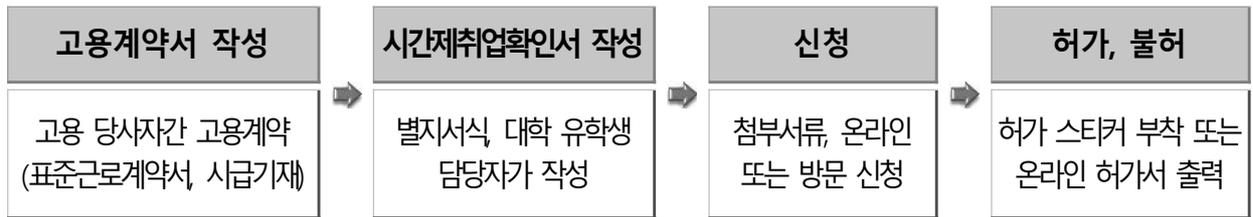


## 7. 시간제 취업

### 가. 기본원칙

-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,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
-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
  - 전문 분야(E-1 ~ E-7)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
    - ※ 시행령 [별표1] 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(예시,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, 회화지도강사 등)

#### 【허가절차】



### 나. 대 상

#### 1) 허용대상

-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
  -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-2-1~D-2-4, D-2-6, D-2-7에 해당하는 사람
  - 어학연수(D-4-1, D-4-7)자격 및 **방문학생(D-2-8)**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

#### 2) 허가제한

- 유학 및 어학연수생 자격을 소지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

- 불성실 유학 활동자 : 출석을 및 평균학점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후단 허용대상자 참조)
  -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: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
  -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자 :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(수료)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,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·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자
    - ※ 다만, 석.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미달,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 지연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허
    - ☞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, 휴무일, 공휴일,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
  - 연구과정(D-2-5)에 유학중인 사람
    - ※ 연구과정(D-2-5)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
  -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(후단 위반자 처리기준 참조)
-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
-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
  -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제조업('17. 4), 건설업('18.10)인 경우
    - ※ 단,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(KIIP 4단계)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
  - 직종제한 : E-1~E-7 전문분야 및 E-9, E-10 분야는 제한
  -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\*에서의 시간제취업활동 제한
    - \*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, 외국어회화학원 등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 형태는 제한
-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\*
    - \*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

- 파견, 도급, 알선\*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

\* 단,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

- 원거리 근무(거주,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30분, 지역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함)

## 다. 시간제 취업 허용 내용

### 1) 심사일반 기준

-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
-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
  - ※ 단,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제한
-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(시행규칙 제27조의2 ② 참조)에 해당하는 지 여부

#### 【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1조의 영업장 예시】

1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
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
3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4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, 목욕장업(沐浴場業), 이용업(理容業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5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6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
7.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-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, 평균학점(이수학점 기준),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
## 2) 대상별 세부 심사기준

### ① (허용대상) 각 자격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가

#### ○ 유학생(D-2)

- (최소 성적)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이상인 경우

※ 단,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

- (한국어 능력)

· 전문학사 및 학사 1~2년 : 토픽 3급(KIIP 3단계 이수) 이상 자격증 소지자

· 학사 3~4년 및 석·박사 : 토픽 4급(KIIP 4단계 이수) 이상 자격증을 소지자

- (영어트랙과정 특례)

·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

· 단,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

#### ○ 어학연수생(D-4)

- (최소 출석)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인 경우

- (한국어 능력) 토픽 2급(KIIP 3단계 이수) 이상 자격증 소지자

### ② 처리요령

○ 어학연수생(D-4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, 장소는 1곳으로 한정

○ 유학생(D-2)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○ 신청사항(장소, 근무시간 등)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

### ③ 제조업, 건설업체 제한에 따른 서류심사 기준(체류관리과5475, '17.9.12.)

○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,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

○ 다만,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

i)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대학이 제출하는 '시간제취업확인서' 상에 기재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

ii) 단,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(KIIP 4단계 이수)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

### 3) 허용시간

○ (어학연수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)
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

○ (학부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 유학생,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+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,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)
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은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시 제외)

○ (석·박사과정) 주당 30시간 이내(인증대학 유학생,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유학생,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유학생은 주당 35시간 이내)

※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)

○ 단, 한국어,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/2 범위 내에서만 허용

<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 >

대학 유형	학년	한국어 능력 수준 (토픽, KIIP)		시작 시기	허용시간		인증대, 성적우수자 혜택 (주중)
					주중	주말, 방학기간	
어학 연수 과정	무관	'18.10.1 이전		6개월후	20시간		25시간
		2급	x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	25시간
전문 학사 과정	무관	'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	25시간
		3급	x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무제한	25시간
학사 과정	1~2 학년	'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	3급	x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3~4 학년	'18.10.1 이전		제한없음	20시간	무제한	25시간
		4급	x	상동	10시간		10시간
			○	상동	20시간	무제한	25시간
석/박사 과정	무관	'18.10.1 이전		제한없음	30시간	무제한	35시간
		4급	x	상동	15시간		15시간
			○	상동	30시간	무제한	35시간

#### 4)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(예시)

-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
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- ※ 단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
#### 5) 허가내용

- 자격약호 : D-2-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
- 허가기간 :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, 장소는 최대 2곳으로 한정
- ※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(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)

#### 6) 장소변경

-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#### 7) 위반자 처리기준

-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

- 불법취업(불법고용)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(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, 체류허가 등 결정)
-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,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
- ※ 단, 성적 및 출석율, 원격지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(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)
-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

※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(입국규제를 유예하고, 학업 의지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)

-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
  - 1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
  - 2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
  - 3차 적발 시 ➡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

## 라. 신청서류

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, 수수료(면제)
- 시간제취업 확인서
-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(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)
-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: 토픽\* (또는 KIIP) 자격증 (해당자에 한함)
  - 영어 수업 과정(트랙)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
  - \*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표도 인정 가능하며,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토픽 성적표 제출 사실과 성적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
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- 단, 제조업, 건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'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'(참고 4-2 서식)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 및 근무내용,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)
  - 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과견업체 등

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

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(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)
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  -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복합직종인 경우 고용주가 작성(서식 별첨)

#### 마.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(허가제외 대상)

-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,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

#### 허가제외대상\* 예시

- 수학생인 학교 내 조교(수업조교 포함) ·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
-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
-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 · 감정, 행사참가, 영화 또는 방송 임시 (1회 및 비연속성)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(\* 체류관리과 -4716, 2010.7.22)
-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, 교내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
-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 통역 요원으로 지정되어 경찰청에서 지정한 순번과 선호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통역활동에 종사하는 경우(다만, 전문 통역관으로 채용되어 전문 직종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)

※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, 보수,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, 허가 대상여부 판단

#### ○ 유학생(D-2)의 수익적 연구 활동

- ① (소속대학 내 연구활동)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,
  - i) 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 : 시간제취업 허가 면제
  - ii)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 :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
- ※ 학업 연계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①지도교수 확인서 및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를 제출받아 개별 심사
- ② (소속대학 외 연구활동)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,

i) **학업과 연계된 연구 참여** :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

※ 학업 연계 여부는 ①지도교수 확인서, ②단과대학장 또는 대학원장 이상 교원 추천서, ③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참여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 (①~③ 모두 자율양식)

ii) **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** :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필요

※ 연구(E-3)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기준은 연구(E-3)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

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(원) 활동은 학업 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

※ 수익적 인턴활동도 수익적 연구활동 허가 기준 준용

○ **유학생(D-2)의 전문직종 분야 인턴 활동 특례**

- **일-학습연계유학(D-2-7) 비자 소지자에 대해 재학기간 중 대학 외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 전문직종 분야 인턴활동 허용**

※ 학점 취득과 무관한 경우라도 **시간제취업허가로 허용(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)**